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	2021. . .	
연월일	(제 회)	

고령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 출 자	고령군수 (총무과장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무통계담당 심사필

# 고령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일자 : 2021. . .

제출자 : 고령군수

## 1. 제정이유

○ 「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」 제15조 제3항에 따라 사회봉사 활동 및 지역사회의 질서 함양과 치안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고령군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군민의 안전에 기여하고 군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

- 고령군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목적
- 고령군재향경우회의 정의
  - 고령군재향경우회(이하 “경우회”라 한다)라 함은 「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」 제5조에 따라 조직되어 고령군 관내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.

### 나. 지원사업, 신청 및 승인, 정산보고 등(안 제3조 ~ 제6조)

- 지원사업 등
  - 지역사회 법질서 확립 및 홍보 사업
  - 지역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
  - 아동청소년 등의 폭력예방 및 주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
  -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- 중복지원 금지
- 사업계획의 승인 등
- 정산보고 등

다. 보조금의 반환, 준용(안 제7조 ~ 제8조)

- 보조금의 반환
- 준용

3. 조례안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해당없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」 제5조 및 제15조 제3항

나. 예산관련 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다. 입법예고 기간 및 결과 : 의견 없음(2021. 09. 15. ~ 2021. 10. 04.)

라. 성별영향평가 결과 : 해당사항 없음

마. 규제영향 분석 결과 : 해당사항 없음

## 고령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」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 양양과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고령군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고령군재향경우회(이하 “경우회”라 한다)라 함은 「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」 제5조에 따라 조직되어 고령군 관내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.

**제3조(지원사업 등)** ① 고령군수(이하 “군수”이라 한다)는 경우회가 군정발전을 위하여 수행하는 다음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지역사회의 범질서 확립 및 홍보 사업
2. 지역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
3. 아동·청소년 등의 폭력예방 및 군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
4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비는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.

**제4조(중복지원 금지)** 군수는 경우회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제3조에 따른 보조금과 같은 종류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.

**제5조(사업계획의 승인 등)** ① 경우회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보조사업에 대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.

제6조(정산보고 등) ① 경우회는 보조금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이 완료된 후 보조사업의 실적 및 정산서 등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7조(보조금의 반환)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이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한다.

제8조(준용) 경우회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「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관련법령 발취

◆ 「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」 제5조 및 제15조 제3항

### 제5조(조직)

- ① 경우회에는 중앙회, 시·도회를 두고 지역회를 둘 수 있다.
- ② 경우회의 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, 시·도회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 및 도청(특별자치도청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소재지에, 지역회는 경찰서 소재지에 둔다.

### 제15조(재정)

- ③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〈 소관 부서명 〉

고령군 총무과	
연 락 처	054-950-6082